

대한지리학회 학술상 규정

2006년 6월 10일 개정

2010년 1월 1일 개정

2011년 9월 23일 개정

2013년 11월 22일 개정

2018년 6월 23일 개정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대한지리학회 학술상』 시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자격) 학술상은 대한지리학회 회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① 지리 분야에 관한 학술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술 분야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자
- ② 관련 학회지 및 저서를 통하여 지리에 관한 학술의 보급과 계몽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자

제3조(선정위원회) ① 대한지리학회 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대한지리학회 학술상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함)를 둔다.

-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7인으로 구성하고,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한지리학회장이 수행한다.
- ③ 선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심의기본원칙 및 규정
 2. 관련규정의 개폐
 3. 수상자 심의 선정
 4. 기타 필요한 사항
-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선정위원회의 임기) 선정위원회의 임기는 대한지리학회 회장단의 임기와 같이한다.

제6조(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대한지리학회 회원 또는 단체회원의 추천에 의한다.

제7조(후보자의 추천절차)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다음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접수는 매년 4월 중순까지로 한다.(2013.11.22.개정)

- ① 수상후보자의 인적사항
- ② 수상 관련 내용 및 개요

제8조(심의 및 시상) ① 심의를 위하여 학회 내 관련부서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② 수상후보자에 관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확정한다.
- ④ 학술상의 심의는 매년 5월 중순까지로 하고, 시상은 정관 제22조의 정기총회에서 하며,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2013.11.22.개정)

제9조(위임규정) 이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기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2009년 학술상은 2010년 학술상과 동시에 진행한다.
4. 이 규정은 2013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8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